

'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등 일부수정(안)

1. 추진배경

- ☐ 대학생에게 다양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하반기 교외 교육근로 활성화 추진
- ☐ 추경 예산(10,740백만원)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배정기준 및 일정 수립
 - '17년 예산 253,016백만원* → 263,756백만원(10,740백만원 ↑)
 - * 다문화·탈북 멘토링(6,750백만원) 및 운영비(3,145백만원) 제외
 - ※ 추경예산은 교외근로에 우선 배정
- ☐ 상반기 운영 시 발굴한 효과적 사업 운영 도모

2. 시행계획 수정사항

① 교외 교육근로 내실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 추가

- (관계부처 협업 추진) 고용노동부, 기술보증기금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외 교육근로기관 발굴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
- (교외 교육근로장학생 업무 발굴) 교육부 내 타 사업 연계를 통해 장학생에게 가치 있는 근로기회 제공

[예시] 근로장학생 배치 관련 교육부 내 사업 연계 현황

- **성인 문해교육(국정과제)** : 성인 비문해자 대상으로 평생교육원, 학력인정학교 등에서 문해교육 실시 시, **근로장학생을 교사 및 행정업무 보조로 활용**
- **유아창의놀이교육(국정과제)** : 유치원 등에서 문화·예술·체육 놀이 교육 시, **지역 소재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및 예·체능학과 전공 대학생 활용**
- **특수학교 자유학기제(국정과제)** : 초·중·고 장애학생 교내외 체험활동 지원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**보조교사로 근로장학생 활용**
 - * 장애학생 특성·유형에 적합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**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학생 우선 배정 고려**

- (유·초·중·고·**특수학교** 지원 활성화) 해당 유형 장학생 소득분위 기준 완화 및 교사 추천제도 신설을 통한 장학생 선발 기회 확대

- (건강한 교육근로장학 문화 정착) 기관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고,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**기관용 교육자료 제작**
- (취업연계 중점대학 지원 강화) '17년 신규참여대학도 적극적으로 취업연계 중점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**운영비 지원**
 - ※ 당초 '16년 취업연계 중점대학 참여대학에 한정하여 운영비 지원

② 예산배정 기준 및 일정 수립

- (예산배정 기준) **지역사회교육근로 및 교육활동지원유형에 예산 우선 배정**하고, 잔여예산 발생 시 타 유형 배정
- (배정일정) 예산 조기 배정을 통한 예산 전액 집행 노력
 - '17. 8월 2~3주차: 추가예산 신청 접수
 - '17. 9월 1주차: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
 - '17. 9월 2주차: 대학별 예산 배정(안) 마련 및 확정

③ 기타 제도 변경 사항

- (교외의무비율 확대)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교외근로 의무비율 당초 35% → 변경 37% 확대 운영
- (소득분위 서류징구 수정기준 반영) '17년 2학기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른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수정기준* 반영
 - * 부모가 '이혼 후 관계단절'인 경우, 주민등록등·초본 추가제출

3. 향후 추진 계획

- ☐ 관계부처 업무 협의 추진: ~8월 말
- ☐ 2학기 정기예산 및 추가예산 배정: ~9월 초
- ☐ 교육부 내 연계사업 추진: ~ 9월 중순
 - 관련 사업별 교육근로장학생 수요신청: ~8월 중순
 - 수요신청 공지 및 장학생 배정 추진: ~ 9월 중순

참고 1 교육근로유형별 변경사항

구분	분류	근로내용	우선 순위
학교 내 교육근로 (A)	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*	장학담당부서의 상담 및 국가지원 학자금관련 홍보지원을 위한 근로	A-1
	교육보조형	대학내 실험·실습실, 도서관 등 교육활동 보조	A-2
	행정업무지원형	학과사무실 등 행정업무지원	A-3
	봉사유형	장애대학생의 학업/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 ※ 소득분위 제한 완화	-**
지역 사회 교육근로 (B)	지역 봉사근로	보건의료기관, 사회복지기관, 보육기관 등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근로	B-1
	취업 연계 유형*	취업연계 중점대학 1~4학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※ 신규참여 대학까지 운영비 지원 확대	B-2
		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4학년 대상으로 근로기관 근무하고, 졸업 후 해당기관 또는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	B-2
	일반교외근로	일반기업체 등에서 근로	B-3
현장 교육근로 (C)	교육활동지원	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독서실, 동아리 및 예체능활동, 방과후교실, 자유학기제 등 교육활동지원 ※ 소득분위 제한 완화, 교사 추천제도 도입	-**
	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	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	-**
	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	초·중·고교생 중 다문화·탈북학생의 학업 및 우리 문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	-**

*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,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제한이 없음

** 봉사유형 및 현장교육근로(교육활동지원,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사업)은 우선순위 불필요

참고 2 시행계획 주요제도 변경사항

20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주요 제도 변경 사항

구분	2016학년도	2017학년도
사업 통합	○ 세부사업별 예산 및 일정 별도 운영 - 국가근로장학사업,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,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 별도운영	○ 국가 근로장학사업, 대학생 청소년교육 지원사업 예산통합 - 사업 일정 통일(다문화·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도 포함)
예산 신청 (배정)	○ 근로기관별 예산 내역 별도 신청·배정 ※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은 별도 예산 없이 교외근로예산으로 운영	○ 근로유형별* 예산 신청·배정 * 일반근로(교내/교외), 장애대학생 봉사유형,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,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(히어로사업 등(대학현장지원부)) ※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유형 예산 배정 ○ 추경예산 배정기준 마련 - 지역사회교육근로 및 교육활동지원 유형 우선배정(교외근로에 우선 배정)
근로 유형	○ 교내/외 근로로 구분 - 교내: 일반교내근로, 봉사유형 - 교외: 일반교외근로, 취업연계형	○ 학교내/지역사회/현장교육근로로 구분 - '17년에는 신(新)근로유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고 -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신설 및 시범운영(소득분위 무관) ※ '18년부터 신(新)근로유형으로 관리
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 지원	○ 권역별 거점대학*제도 도입 - 12개 거점대학 선정(평가 실시) *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한함	○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 관련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지원 확대(교육활동지원분야 등) * 유치원 대상 유아교육 및 예체능 전공 학생 지원포함 ** 유치원 근로장학생활동 범위 생활교육활동, 교통안전 및 환경보전 교육활동, 문화·예술·체육 놀이 보조교사 활용 등 - 소득분위 상관없이 학생선발 가능 - 유·초·중·고교 선생님 추천 대학생 우선선발 ○ 농·산·어촌 지역 근로시, 월4시간범위에서 인센티브 제공 ※ 소득분위 적용배제 가능 ○ 권역별 거점대학 확대 - 기준을 충족한 희망 대학 전체확대 * '16년 예산집행률 95%이상 대학 중 사업계획서 제출 대학

구분	2016학년도	2017학년도
대학 지원	○ 년 1회 대학담당자 집합교육 실시	○ 분기별 대학담당자 집합교육 제공 ○ 우수대학 보상체계 도입 ○ 사례운영집 배포 ○ 대학 자체선발기준 공개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에 팝업창 안내
교외 교육 근로 내실 화	○ 근로장학기관 장학생간 상호평가제 도입 (2학기 시범운영) ○ 교외근로의무비율 - 4년제: 25% 전문대: 30% ○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 운영 - 25개 대학 선정(평가 실시) - 전년도 우수대학 서류전형 일부면제, 담당자 포상 등 추진	○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 확대 - 기준*을 충족한 희망 대학 전체 확대 * 교외근로비율 '16년 기준 충족대학 중 사업계획서 제출대학 - '17년도 참여대학 대상 운영비 지원 ○ 직전학기 50시간이상 전공과 연계된 기관 근무시 인증서 발급 ○ 교외근로기관의 경우 하나의 업무에 여러명 선발 권장(2명 이상) ○ 근로기관-장학생간 상호평가 전면 시행 ○ 교외근로기관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마련(2학기) - 장학생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내용 포함 ○ 교외근로의무비율 확대 - 전체대학 37% ※ 사업예산 증액에 따라 교외근로 비율 상향 조정 ○ 양질의 교외 교육근로기관 확대 노력 - 고용노동부,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의를 통한 양질의 교외근로기관 확대 추진 ○ 교육부 내 연계가능사업 발굴